

예산총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1,418,133	13,842,544
일반회계	397,547,234	11,926,417
특별회계	63,870,899	1,916,127
공기업특별회계	32,247,238	967,417
상수도사업	8,755,192	262,656
하수도사업	23,492,046	704,761
기타특별회계	31,623,661	948,710
의료급여기금	1,588,677	47,660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234,840	7,0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81,200	5,436
농공지구조성	10,051,000	301,530
중소기업육성기금	5,320,000	159,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60,368	34,81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03,000	15,090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7,920,000	237,600
주택사업	123,147	3,694
기반시설	222,732	6,682
수질개선관리	3,509,697	105,291
농업발전기금	809,000	24,2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72,57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